

「구미 야시장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「구미 야시장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 야시장 운영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(1) 추진근거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47조제2항

(2) 필요성

- 야시장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.

다. 위탁사무 내용

(1) 개장 전

- 운영(안전, 교통, 홍보) 계획 및 체험·공연행사 기획
- 야시장 홍보 및 운영요원 선발
- 야시장 환경(공연 무대, 간판, 경관조명, 포토존) 조성

(2) 야시장 운영

- 야시장 구역 정비(기존 매대·적치물 정리, 차량 통제)
- 포차 매대 위치 지정 및 매대 셀러 관리

- 체험·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셀러 대상 위생·판매 수칙 교육
- 관람객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, 화재 및 무질서 등 비상 상황 대응
- 시장 종료 후 환경정비(쓰레기 청소 등)

(3) 종료 후

- 정산 및 성과 측정·보고

라. 야시장 사업 개요

- (1) 기 간 : 매년 4월 ~ 5월 예정
- (2) 장 소 : 구미새마을중앙시장 및 강동지역 일원
- (3) 소요예산 : 280백만원
- (4) 내 용 : 공연, 체험부스, 매대 운영 등

마. 위탁기간 : 2025년 ~ 2028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(1) 모집방법 : 공개모집
 - 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수탁자 모집
- (2)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3. 부서의견 :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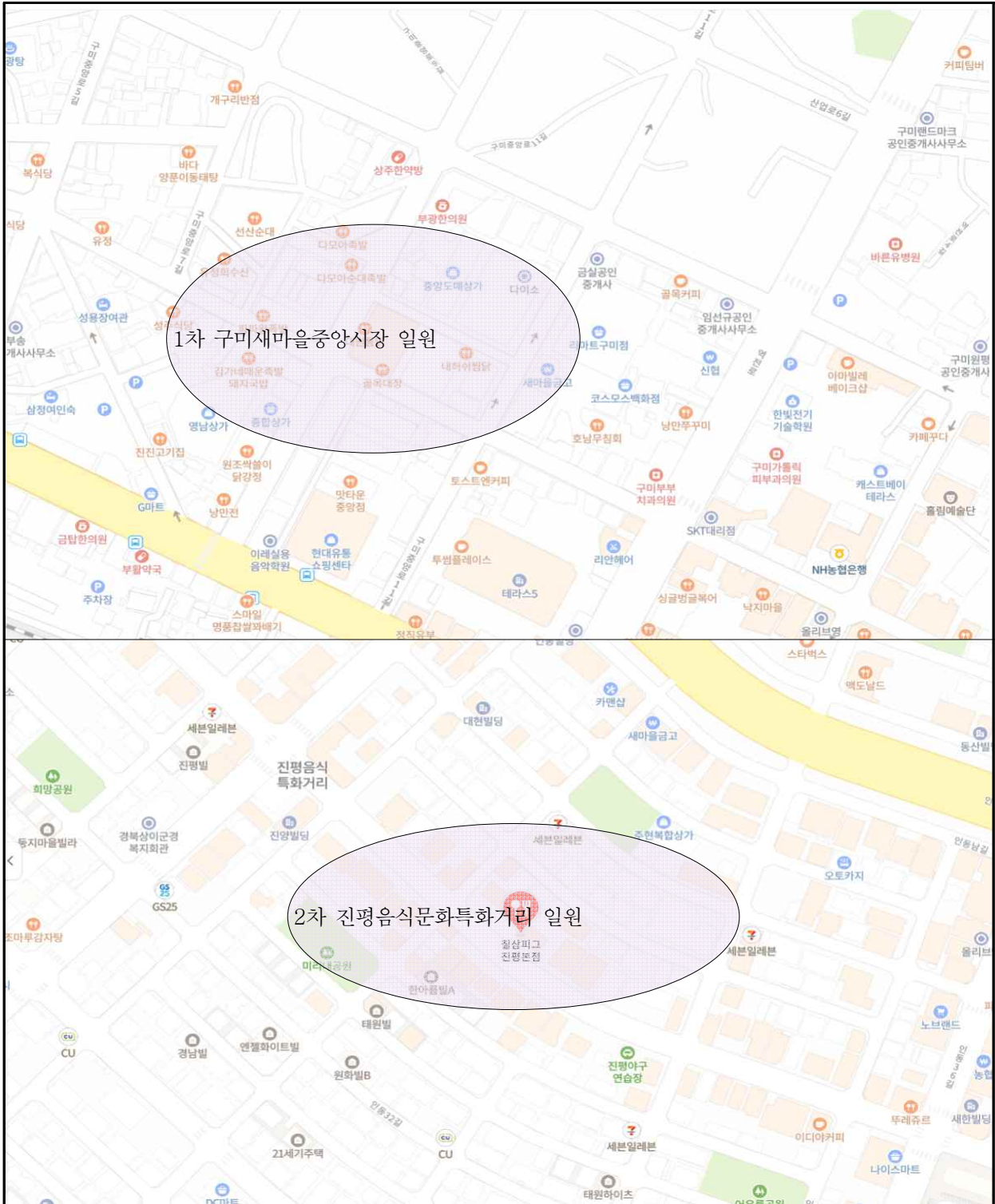
4. 참고사항

가. 사진대지

나. 관계법령

사전대지

□ 위치도(예 정)



□ 현장사진

새마을
중앙시장
예정지



진평음
식문화
거리
예정지



「구미 야시장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- 구미 야시장 민간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
-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47조(활성화 사업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2024년 ~ 2028년(5년)
- 연간 총16회 운영 및 무대행사 2회 진행
- 취식용 테이블 및 탁자 세트 30개
- 야간·휴일 일평균 인건비 6시간 근무, 무대행사 1일 6시간 진행
- ※ 타 야시장 지출단가 참고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세출	20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1,32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20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1,320,000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20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1,320,0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

-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김보우(☎480-263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산출기초	금액	비고
총계	※ 총 16회 운영 기준	280,000	
소계		50,200	
무대 / 행사	공연 촬영비	300,000 원 × 2 회 =600,000	600
	공연자 사례비	2,500,000 원 × 16 회 =40,000,000	40,000
	무대 및 음향 장비	300,000 원 × 16 회 =4,800,000	4,800
	진행비(MC, 보조인력)	300,000 원 × 16 회 =4,800,000	4,800
소계		46,800	
무료 체험프 로그램 운영	재료비 및 운영소모품비	300,000 원 × 16 일 =4,800,000	4,800
	행사관련 인건비(10인/회 - 6시간)	2,000,000 원 × 16 일 =32,000,000	32,000
	장소 및 설비 임차	10,000,000 원 × 1 식 =10,000,000	10,000
소계		82,500	
운영비	안전관리 및 운영인력 17명	130,000 원 × 272 명 =35,360,000	35,360
	부스·텐트·식탁·의자 임차	10,000,000 원 × 1 식 =10,000,000	10,000
	소모성물품비(쓰레기봉투 등)	390,000 원 × 16 회 =6,240,000	6,240
	행사보험료	5,000,000 원 × 1 식 =5,000,000	5,000
	가스 설치 및 관리	5,000,000 원 × 1 식 =5,000,000	5,000
	구급차 임차 및 응급요원	2,000,000 원 × 1 식 =2,000,000	2,000
	셀러 교육 및 관리	10,000,000 원 × 1 식 =10,000,000	10,000
	매대 전기배선 및 관리	8,900,000 원 × 1 식 =8,900,000	8,900
소계		76,500	
홍보비	홍보물(현수막 등) 제작	50,000 원 × 500 매 =25,000,000	25,000
	안내용 배너 제작	50,000 원 × 30 매 =1,500,000	1,500
	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매체 광고	30,000,000 원 × 1 식 =30,000,000	30,000
	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	20,000,000 원 × 1 식 =20,000,000	20,000
소계		24,000	
기획/ 운영	기획 / 운영비	4,000,000 원 × 6 월 =24,000,000	24,000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

제47조(활성화 사업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·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희
	팀 장	최 원 영
	담 당 자	김 보 우 (480-2633)